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

1. 고지의무 사업장 일반정보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장 주소	취급 유해화학물질 수	사업장 비상연락처	사업장 대표 성명(서명)

2. 지역사회 고지 사실 알림

- (1) 우리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화학사고 시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- (2) 상세한 고지정보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①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icis.me.go.kr>)의 지역사회 고지 항목
 - ② 추가방법: ()

년 월 일

- 주) ① 제20조에 따라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서면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1. 고지의무 사업장 일반정보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장별로 대표자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.
- ② 취급 유해화학물질 수는 가장 유해성이 큰 물질명과 물질 수를 작성한다(예: 벤젠 등 12종).
 - ③ 사업장 비상연락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사업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성한다(예: 대외소통 담당자 또는 담당조직 연락처).
 - ④ 지역주민이 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(기초 지자체 누리집, 게시판 등)가 환경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2. 지역사회 고지사실 알림의 (2), ② 추가방법 항목에 작성한다.